



2019년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안내

목 차

I.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05
II.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이란?	06
III.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	08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08
[서식]	
붙임1) 인증 신청서(신규·갱신)	16
붙임5) 사업계획서(신규)	18
붙임6) 사업계획서(갱신)	23
붙임11) 자가생산 증명서	30
붙임12)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31
붙임13) 소규모 매입 증명서	33
붙임14)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34
붙임2) 승계신고서	37
붙임3) 인증 중단 확인서	39
붙임4) 인증서(안)	41
2)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신청안내	43
[서식]	
서식1) 현장코칭 사업 지원신청서	46
서식2) 만족도 조사표(안)	47
3) 안테나숍	48
4) 유통플랫폼	49

1.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비전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목표

농촌융복합산업 핵심경영체 육성 및 제품판로 확대

- ◆ 인증사업자 수 : 전년대비 5%이상 증가('18년 1,522개소 → '19년 1,600)
- ◆ 인증사업자 평균매출액 : 전년대비 4.5%이상 증가('18년 1,776백만원 → '19년 1,856)

대상

농업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가공판매업체 등

추진
과제

핵심경영체육성	제품판로 지원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사업자 지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사업자 지정·관리 체계화 - 인증사업자 역량강화 - 성과관리 시스템운영 활성화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상시적 현장코칭 및 보육매니저 제도 운영 - 지원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코칭 내실화 - 농촌융복합산업 포털사이트에 전문위원 pool 정보공개를 통한 역량 제고 - 성과 미흡 또는 불성실코칭 전문위원 해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테나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유통망과 연계하여 시장 친화적인 제품 개발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과 BI(Beyond Farm)를 연계 홍보 강화 -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 운영 확대 •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대형마트 등을 활용 프로모션 지속 추진 - 우수 제품을 발굴하여 판로 지원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농촌융복합산업 자원 및 제조·가공산업 현황 조사 분석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수립 및 신규 사업 발굴 활용

※ 시설디렉토리 구축사업은 3년 주기(20년) 추진

◇ 지역별 제조·가공·유통·저장시설 DB자료 관리 및 시설디렉토리 활용도 제고

II.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이란?

1.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이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의 2차산업과, 체험·관광 등의 서비스 3차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동의 의미입니다.



내부적 요인

1. 중소농, 고령농 등의 소득원(일자리)필요
2. 농촌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요구

외부적 요인

1.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 고조
2.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3. IT, BT, NT 등 기술과 농업의 융복합

○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농촌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2, 3차 산업과 연계하여 창출된 부가가치·일자리가 농업·농촌으로 환원합니다.

2. 왜 농촌융복합산업인가?



농업인

농산물 판매와 더불어 2·3차산업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소비자

우리 농부가 직접 만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우리 농촌의 맛과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즐길거리로 농업·농촌의 가치 제공합니다.



농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로 새로운 활력 도모합니다.

3. 6차산업 인증사업자 표시 사용안내



6차산업 인증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제품 그 제품의 포장용기 홍보 등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 포함)에 인증마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품별로 인증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서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증사업자 표시는 www.6차산업.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인증의 표시)

Ⅲ.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인증제 운영 기본방향>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육성·관리를 통한 저변 확대 및 내실화 추구
- 농촌융복합산업의 근본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증·갱신 기준의 확립
- 산업형태·매출액 규모에 따른 교육·판로지원 등 사후관리 연계

○ 개요

- (목적)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선도경영체를 육성하고, 컨설팅·판로지원·홍보 등을 통해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6.3) 및 시행('15.6.4)

- (현황) '18년도 신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279개소 승인(누계 총 1,522개소)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구	대전	세종	인천	울산	광주
1,522	161	162	124	151	235	212	197	140	94	2	-	19	16	7	2

* 인증사업자 수(누적) : ('15년) 802개소 → ('16) 1,130 → ('17) 1,397 → ('18) 1,522

○ 추진 절차

- (절차) 인증심사(신규·갱신)는 수시로 실시(최소 분기 1회이상 시행)

진행	① 인증신청 (신규·갱신)	② 인증심사	③ 인증추천	④ 적격검토	⑤ 확정
추진 기관	시도 및 6차산업지원센터	시도 및 6차산업지원센터	시도 및 6차산업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자원)	농식품부
역할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	자격요건을 갖춘 경영체에 대하여 서면·현장심사	전문가 심사를 바탕으로 한국농어촌 자원개발원에 최종 추천	지원센터별 추천 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최종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통보

① 인증신청

< 인증절차 및 추진기관 >

구분	인증신청 (신규·갱신)	인증심사 (전문가 3~7인)	인증추천 (70점 이상)	추천검토	인증자 확정 통보
인증 일정	수시	(원칙)수시 (예외)분기회 이상	수시	수시	수시
추진 기관	신청자 → 6차산업 지원센터	시도 및 6차산업 지원센터	시도 및 6차산업지원센터 → 한국농어촌공사 (농자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자원) → 농식품부	농식품부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예정) 중인 경영체가 인증신청(갱신)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제출

* 인증·갱신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국가에서 공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해당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반드시 자격요건이 충족된 경영체에 한정하여 신청 접수

*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제 안내



| 제주6차산업협회 네트워크



| 순회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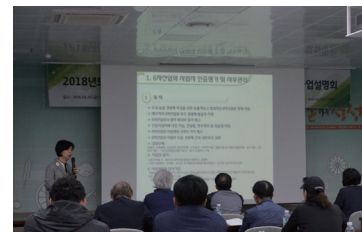
| 역량강화교육



| 인증경영체 모니터링



| 인증경영체 선진지 견학



| 인증설명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사업 형태 및 주원료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이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달성 및 증빙여부 -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38백만원('16년 37,197천원, '17년 38,239천원)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으로 산정 - 운영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에,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고용직 신고서,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

② 인증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규·갱신 경영체 대상으로 인증제 심사위원회(관련분야* 전문가 3~7명)를 구성하여 각 기준에 따라 서면·현장심사 진행

* 농경제, 제조·가공, 농산업, 마케팅, 체험·관광, 유통 등 최소 3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선정하되, 총 심사위원의 1/2 이상으로 구성

<'19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갱신 심사기준>

신규기준		갱신기준		배점
농촌융복합산업기반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역량 평가 - 사업주(경영주)의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 ※ (중빙)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및 위탁한 교육의 이수증, 수료증, 확인서 	계획달성도 및 사업성과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계획서에 담긴 세부사업, 목표 달성 여부 ※ 현장 실사 중심으로 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도 - 최근 3년 간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인프라 구축(10) - 가공시설, 체험장,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일자리 창출 - 최근 3년간 일자리 창출 증가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 - 원물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전년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성장률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의 합산 	10
향후계획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산업화 완성도 - 1차, 2차, 3차 산업 간 융복합성 	향후계획 (60)	좌동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경쟁력 -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차별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성 - 지역 내 관광자원, 산업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을 어떻게 연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의 적절성 -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투융자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가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의 인증 및 자격취득 정도(1),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수출실적(1), 관련 수상실적(2) 	가점 (5)		5
계	-		-	105

< 가 점 표 >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가점 (5)	인증 및 자격 취득정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 취득 실적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지자체 포함) 발급하는 자격증, 인증서 	1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 실적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1
	수출실적(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원료 또는 제품의 수출 실적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 증명서 	1
	농촌융복합 산업관련 수상 실적(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 품평회, 박람회 등 수상 실적 • 척도 : 전국단위 수상(2점), 도단위 수상(1점) • 증빙 : 수상 증서(상장, 표창장, 포상 등) 	2

③ 인증추천

- 종합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영체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 및 농식품부에 제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④ 적격검토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는 시·도별 추천된 경영체에 대한 관련서류 최종 검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⑤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농식품부는 최종대상자를 확인하여 인증(갱신)일 지정, 시·도 및 지원센터에 인증(갱신)사업자 통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서 발급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유효기간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 이전 인증 만료일 익일부터 3년 연장
- 인증을 받은 경영체가 유효기간 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기간만료 후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갱신 신청

* 단,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예시: 1차생산물의 변경시)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인증 신청

** 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도래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절차 통보

- 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당해연도에는 신규 인증 신청이 불가능하며, 지원센터는 인증서 회수 등 사후조치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을 통한 인증, 1년간 사업 중단, 계획과 다른 사업 수행,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불가피한 사유(자진폐업 등)의 발생으로 인증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센터는 경영체의 운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중단 내용 확인서를 수리

• 성과관리시스템 DB 구축

-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사이트(www.6차산업.com) 내 구축된 성과관리시스템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신규·갱신·내용 변경 시 수시로, 지원센터별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현행화*

* 경영체 사업현황(산업형태, 제품정보, 인증취득 등), 경영체 사업실적(매출액, 일자리, 방문객 수 등), 지원센터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실적, 모니터링, 판로지원, 현장코칭 등)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강화

- 신규 인증/갱신 절차 안내, 인증심사, 취소 등 사후관리 철저
- 지원센터별 인증사업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사업계획서 이행상황 등 모니터링 실시
- * 인증기준 : 대상주체, 사업장 입지, 주원료 사용비율, 2년간 평균매출액 등
- (예비)사업자 대상으로 창업교육, 스타트업 스쿨을 운영하고, 인증사업자 역량강화 및 서비스교육 강화

| 문의 |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064-722-7917



stormand@jri.re.kr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지원혜택>

구 분	주 요 내 용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신축 및 리모델링, 운영자금 등 지원 (이자율 2.0%) - 대출규모 : 3억원 ~ 30억원
농촌융복합산업 관련사업 선정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사업자를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관련사업 추진 시 가점 부여 등 선정 우대 - (제조·가공)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지원, 산림가공시설 지원 등 - (식품·외식·유통) 찾아가는 양조장, 고부가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우수외식업지구, 농가맛집, 농가교육농장, 식품관련 R&D 등 - (관광) 체험휴양마을지원, 농촌테마공원 등 - (복합)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 지역단위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행복생활권연계협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판로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판촉전, 유통전문가(MD 및 바이어 등) 초청 품평회, 제품 및 브랜드 개발·개선 등의 지원을 통해 판로확보 지원 - 제품 브랜드 개발 및 개선 지원 - 온라인 판매 지원(상세페이지 제작, 입점 등) •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과 안테나숍 등 입점 지원
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사업자는 TV, 신문,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중점 홍보 - 월별 2~3개소씩 공중파, 증편 등을 통해 중점 홍보 -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및 홍보(매월)

붙임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신규·갱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갱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신청단위 []농업인, []개인·법인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유형구분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1×2×3차형(복합형)		
	구분 [] 최초 인증 신청, [] 갱신(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계획	<붙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갱신의 경우, 사업계획서 외의 서류는 변경사항 있는 경우만 제출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동 의 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승계를 받은 자의 정보와 승계 내용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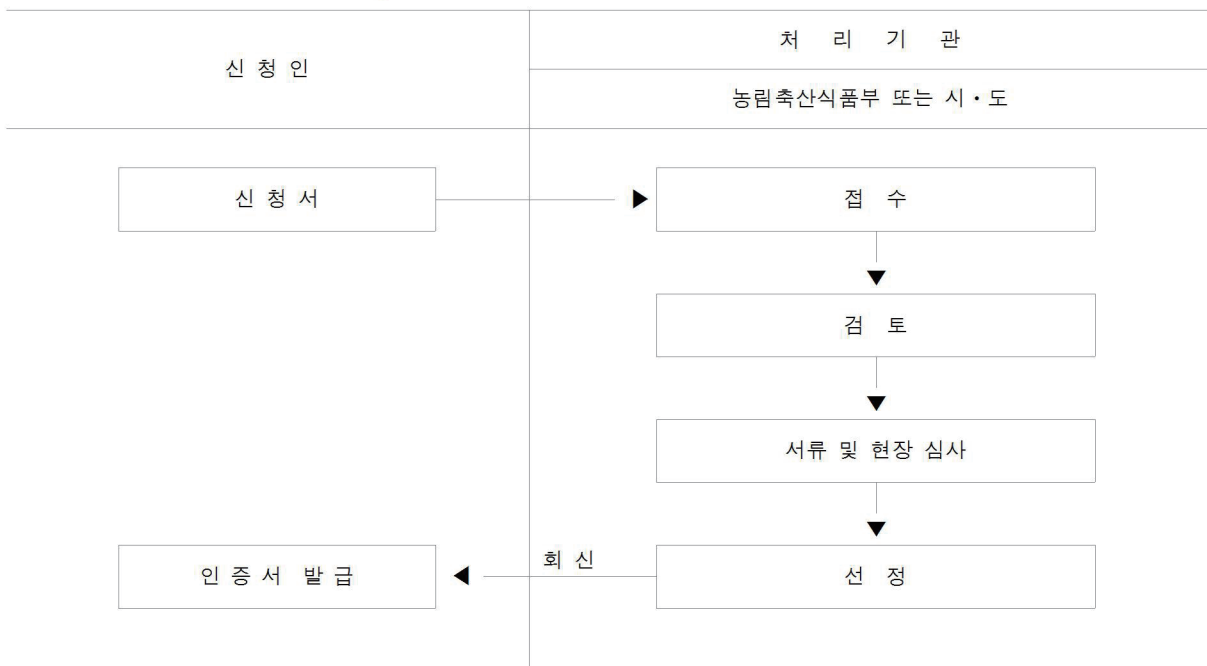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5.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유형은 제조·가공 중심인 경우 1×2차형(가공형), 체험·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제조·가공, 체험·관광,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2×3차형(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5쪽 중 1쪽)

사 업 계 획 서(신규)

I. 추진 사업의 명칭 :

II. 사업자 일반 현황(작성일 기준: . . .)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설 립 일	
연 락 처			
주 소			
업 종		자본금	백만원
주 생산 품)			
매출액 및 고용 현황 <small>*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매출액: 백만원 * 농산물 생산(1차): , 농산물 가공(2차): , 농촌 체험·관광(3차): ■ 고용 현황: 총 명 * 유급종사자: 명(상시2: 명, 임시3: 명) 무급종사자: 명(가족: 명, 기타: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small>* 해당부분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small>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checkbox"/> 자가생산 농장면적 : m²(전 답) * <input type="checkbox"/>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농장면적 : m²(전 답)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checkbox"/> 자가생산 시설면적 : m²(하우스 축사 기타) * <input type="checkbox"/>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m²(하우스 축사 기타) 	
	3차	공장면적 : m ² (대지 건물) 시설면적 : 체험 m ² , 음식점 m ² , 숙박 m ² , 식매장 m ² , 기타 m ² 연간(전년도) 방문객수(체험객수) : 명	
특 이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 순으로 기재)		

- 1) 매출액 기준 상위 3가지 상품(제품)을 기재하며, 사업자의 주요 분야가 식당(농가맛집 등)일 경우 매출 상위 3개 메뉴를 기재합니다.
- 2)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 3)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예시) 10명을 5개월간 월 10일, 일 5시간씩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500시간(10명×5개월×10일/월×5시간/일=2,500시간), 인원으로 환산 시 1.3명(2,500시간/1,920시간=1.3명)

Ⅲ.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역량[사업자(사업주)의 농촌융복합산업 기본역량]

①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실적(최근 3년간, 신청년도 포함)

교육명	년/월	장소	주최(주관)기관	참고

② 농산물 가공, 체험, 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 인증 취득 현황

자격증/인증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③ 농산물 가공, 체험, 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출원 실적

증명서/특허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④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 품평회, 박람회 등 수상실적(도단위 이상)(최근 3년간, 신청년도 포함)

행사명	수상등급	주최(주관)기관	참고

Ⅳ.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사업자(사업주)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추진 실적]

① 매출·수출 실적(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 포함)

구 분	매출액(백만원)	수출액(\$)	비고(수출국별 수출액)
20 년(인증신청 전년도)			
20 년(인증신청 전전년도)			

② 고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고용인원	유급종사자		무급종사자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가족	기타
20 년(인증신청 전년도)					
20 년(인증신청 전전년도)					

*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V.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향후 3년간)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	①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 ②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p>1.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 사업의 개요, 기본 방향, 추진체계, 농촌융복합산업 형태 기술: 1차·2차·3차 산업 간 연계 형태, 2차·3차 산업과 1차 산업과의 관계, 부가가치 제고 방식</p> <p>2.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신상품 개발, 제품의 구체적인 판로 확보방안(직매장 활용, 온라인 판매, 체험객 유치 등), 고객 확보 노하우, 홍보·마케팅 계획을 통한 매출 증대 등 계획의 독자성, 창의성,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기술,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포함</p>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②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자원과의 연계성

1.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방식

지역주민 고용 계획,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활동(장학금, 마을잔치 등) 계획 등에 대해 기술

2. 지역 내 관광자원,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 활용·연계 방안

지역 내 종합가공센터 활용, 체험농가와의 연계, 체험마을의 숙박시설 활용 등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2차 가공, 3차 체험·서비스에 사용되는 1차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3년간 계획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 전년 기준

품 목	총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 지역: 사업장(경영체)이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를 의미하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시·군(기초지방자치단체)을 포함

<향후 확보 계획> ※ 향후 3년간 연평균

* 작성 예시 : [향후 3년간(당해년도 포함)의 계획 30톤 / 3년] -> 10톤

품 목	총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기 타

기타 특이사항 자유 기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7쪽 중 1쪽)

사업계획서(갱신)

- I. 추진 사업의 명칭:
 II. 사업자 일반 현황(작성일 기준: . . .)

성명(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설립일	
연락처			
주소			
업종		자본금	백만원
주 생산 품1)			
매출액 및 고용 현황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 총 매출액(전년도): 백만원 * 농산물 생산(1차): , 농산물 가공(2차): , 농촌 체험·관광(3차): ■ 고용 현황: 총 명 * 유급종사자: 명(상시2): 명, 임시3): 명 무급종사자: 명(가족: 명, 기타: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사업장 현황 * 해당부분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 [] 자가생산 농장면적: m^2 (전 답)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농장면적: m^2 (전 답) * [] 자가생산 시설면적: m^2 (하우스 축사 기타)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m^2 (하우스 축사 기타)	
	2차	공장면적: m^2 (대지 건물)	
	3차	시설면적: 체험 m^2 , 음식점 m^2 , 숙박 m^2 , 직매장 m^2 , 기타 m^2 연간(전년도) 방문객수(체험객수): 명	
특 이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운영 현황	* [] 해당 없음 * [] 설치·운영(아래 내용 작성)		
	① 시설 주소: ② 건축물 종류: ③ 사업계획 승인일자:		

- 1) 주생산품란에는 매출액 기준 상위 3가지 상품(제품)을 기재하며, 사업자의 주요 분야가 식당(농가맛집 등)일 경우 매출 상위 3개 메뉴를 기재합니다.
- 2)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 3)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예시) 10명을 5개월간 월 10일, 일 5시간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500시간(10명×5개월×10일/월×5시간/일), 인원환산 시 1.3명(2,500시간/1,920시간)

Ⅲ. 추진실적

추진실적	①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 ② 매출·수출 실적					
1.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실적 (3년간: 갱신연도 미포함)						
① 주력제품(상품)의 지역 농산물 사용실적(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내 매입 등)						
연도	주력 상품명	농산물	소요량 (ton)	지역농산물 사용량(ton)	지역농산물 사용비율(%)	조달방법 (자가, 계약, 매입)
20 년 (갱신신청 전년도)	주력 상품 1	농산물①				
		농산물②				
		농산물③				
	주력 상품 2					
20 년 (전전년도)						
20 년 (인증(갱신)년도, 전전전년도)						
② 지역농가와의 계약재배 현황						
계약농가 (성명, 농원명)	계약기간 (년/월~년/월)	계약품목	계약물량 (kg)	지급금액 (천원)		
2. 매출·수출 실적(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 포함)						
구분	매출액(백만원)	수출액(\$)	비고(수출국별 수출액)			
20 년(갱신신청 전년도)						
20 년 (전전년도)						
20 년 (인증(갱신)년도, 전전전년도)						

추진실적

③ 고용실적, ④ 사업자 역량강화 실적, ⑤ 기타

3. 고용실적

(단위: 명)

구 분	총 고용인원	유급종사자		무급종사자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가족	기타
20 년(인증신청 전년도)					
20 년(인증신청 전전년도)					
20 년(인증(갱신)년도, 전전전년도)					

*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4. 사업자 역량강화 실적

①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실적

교육명	년/월	장소	주최(주관)기관	참고

②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인증 취득 현황

자격증/인증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③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출원 실적

증명서/특허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④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품평회·박람회 등 수상실적(도단위 이상)

행사명	수상등급	주최(주관)기관	참고

5. 기 타

기타 사업성과 자유 기술

IV.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향후 3년간)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	<p>①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p> <p>②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p>
<p>1.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p> <p>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추진체계, 농촌융복합산업 형태 기술: 1차·2차·3차 산업 간 연계 형태, 2차·3차 산업과 1차 산업과의 관계, 부가가치 제고 방식</p>	
<p>2.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p> <p>신상품 개발, 제품의 구체적인 판로 확보방안(직매장 활용, 온라인 판매, 체험객 유치 등), 고객 확보 노하우, 홍보·마케팅 계획을 통한 매출 증대 등 계획의 독자성, 창의성,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기술,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포함</p>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②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자원과의 연계성

1.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방식

지역주민 고용 계획,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활동(장학금, 마을잔치 등) 계획 등에 대해 기술

2. 지역 내 관광자원,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 활용·연계 방안

지역 내 종합가공센터 활용, 체험농가와의 연계, 체험마을의 숙박시설 활용 등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2차 가공, 3차 체험·서비스에 사용되는 1차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3년간 계획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 전년 기준

품 목	총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 지역: 사업장(경영체)이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를 의미하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시·군(기초지방자치단체)을 포함

<향후 확보 계획> ※ 향후 3년간 연평균

* 작성 예시: [향후 3년간(당해년도 포함)의 계획 30톤 / 3년] -> 10톤

품 목	총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p>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p>	
------------------------------	--

<p>기 타</p>	
------------	--

<p>기타 특이사항 자유 기술</p>	
----------------------	--

V.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계획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만 작성

1. 기존에 승인받은 운영 계획

2. 주요 변동사항

자가생산 증명서(00년도)

생산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작물명	재배지 주소	재배 기간 (00년00월~00년00월)	수량 (Kg)	비고

※ 자가 생산 작물별 수확 직전 사진 첨부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농산물의 매수인(수급자) _____ (이하 “수급자”라 한다)와(과) 매도인(공급자) _____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작물재배)

작물명 (품목)	재배지 주소	재배 면적 (㎡)	계약 물량 (kg)	계약액 (원)

1. “공급자”는 상기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급자”에게 매도하고 “수급자”는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재배협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 농기구 등 구입은 “수급자”와 “공급자”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조(규격 및 단가)

1. 계약대상 농작물의 규격, 단가 및 포장 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	품종	규격	수매 단가 (원/kg)	포장 단위

2. 1항의 수매단가는 출하시점에 산지 시세와 농작물의 품질, 규격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수급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 및 대금지급)

1. 계약금은 상호 협의 하에 “수급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2. 잔금은 제1조의 수량이 완납된 후 30 일 이내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인수방법)

1. “공급자”는 “수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농산물을 인도한다.
2. “수급자”는 “공급자”의 농산물을 검수한 후 인수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3. 농산물 인수 후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공급자”의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수인(수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매도인(공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소규모 매입 증명서(00년도)

매입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매도자	상호명		주소	
	성명	(인)		

품목	매입일자 (년/월/일)	수량 (kg)	가격 (원)	비고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① 총괄

고용인 (雇用人)	업체명	(인)
	대표자 성명	

연도	근무자	연간 근무 시간	연간 보수
2018년	계	00000시간	원
	근무자A	0000시간	원
	근무자B		
	근무자C		
2017년	계	00000시간	원
		0000시간	원
2016년	계	00000시간	원
		0000시간	원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② 월간 (00년도)

고용인 (雇用人)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월	근무자	월간 근무 시간	월간 보수	확인	비고
계		0000시간	원	*근무자 서명	
1월		000시간	원	*근무자 서명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③ 일간 (00년도 00월)

고용인 (雇用人)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근무자	근무자 성명	(인)

근무일	근무 일시	근무 시간
계	-	000시간
1일	00시~00시	00시간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승계인	신청단위 []농업인, []개인·법인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승계 내용	인증 번호	승계일	
	사업장 소재지		
	승계 사유 [] 상속 [] 양수(讓受) [] 합병 [] 그 밖의 사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증 사업자 승계사실 증명 자료 2. 기 발급된 인증서	수수료 없음
------	--------------------------------------	-----------

동 의 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승계인 정보와 승계 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승계를 받은 자의 정보와 승계 내용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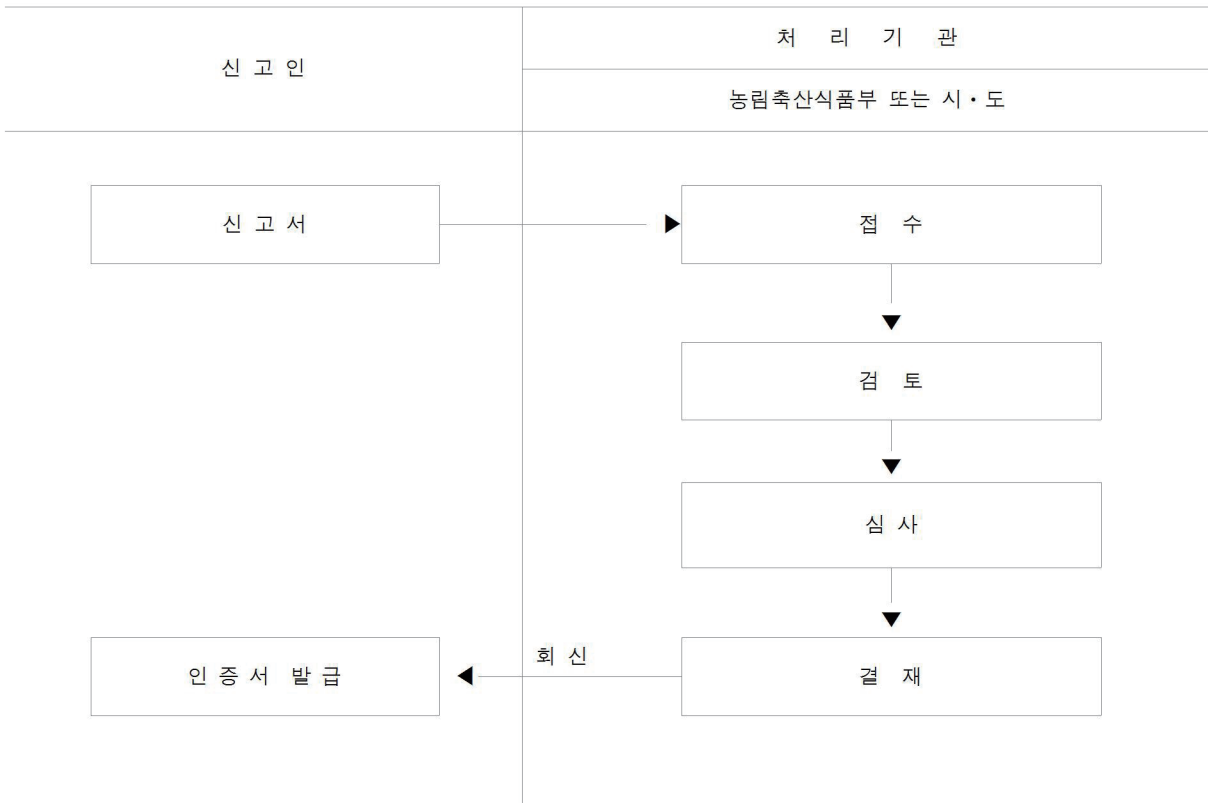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승계인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5. 주소란에는 승계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인증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7.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중단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	-----	----------

신청인	인증번호(인증일)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중단사유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중단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교부받은 인증서 원본 1부(회수)	수수료 없음
----------	-----------------------	--------

동 의 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필요한 경우, 인증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대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사업자로 선정, 상기 사유로 인해 인증중단을 신청함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보 시스템(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중단사항을 공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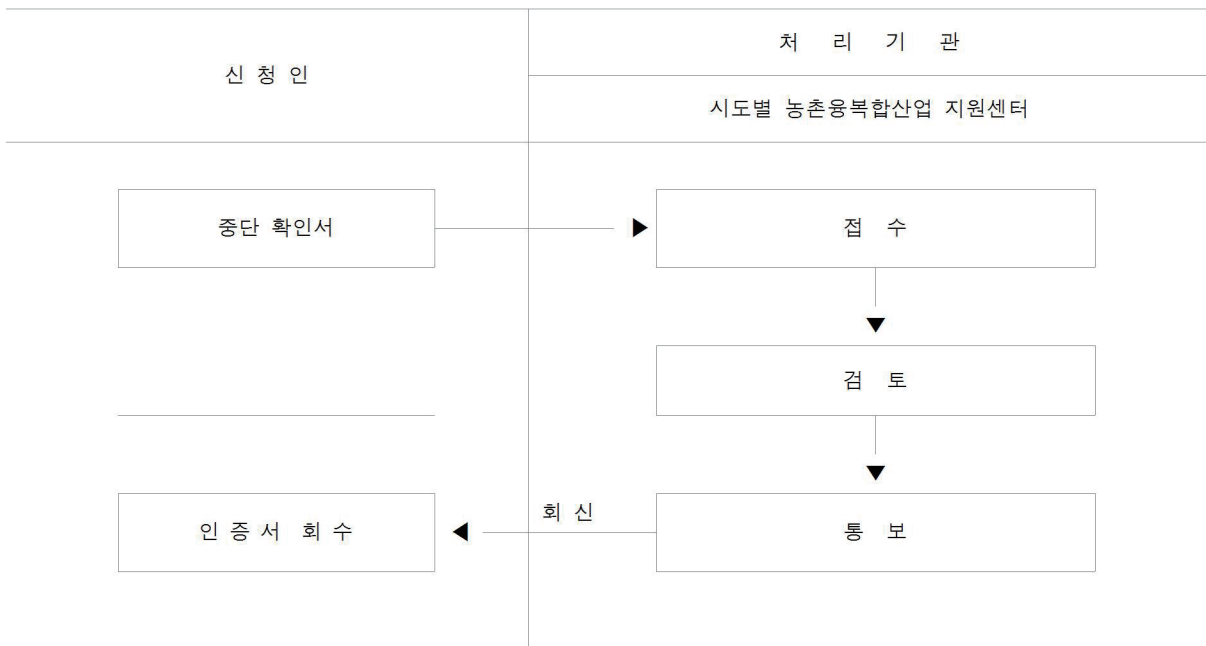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5.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변경 사항 >

일 자	내 용	확인
20 . .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농촌산업과

2.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신청안내

2019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분야별 맞춤형 코칭지원 및 상시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현장 밀착형 방문코칭 제공

1. 사업목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성장 유도

2.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촌에 소재한 농업관련 협동조합·법인, 농촌마을, 작목반, 들녘경영체, 농협, 산림조합
 - 민박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한정
 - *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함
 - * 창업단계 경영체에 대한 현장코칭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중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조항 예외 적용

3. 시행기관 : 시장·도지사

- 현장 코칭사업은 관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수행

4. 지원 분야

분야	지원 대상 분야
경영	•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디자인, 재무, 생산성향상, 지적재산권, 법률, 농촌관광, 수출
기술	• 제품개발, 가공기술, 공장신축·증축, 품질관리, 법규준수, 위생관리, 공정개선, ICT(쇼핑몰구축 등), 음식개발
기타	• 상기 분야 외 농업인들이 코칭을 희망하는 분야

5. 지원조건 및 내용

- 코칭횟수 및 기간
 - 유형①(일반코칭) : 경영체당 1회 50만원(최대 4회)

- 유형②(제품컨설팅) : 경영체당 1회 300만원(최대 2회, 유통업체 입점조건)
- 유형③(보육매니저) : 경영체당 1개월 100만원(최대 12개월, 월 4시간 이상)
* 코칭은 동일한 분야 또는 각각 다른 분야로 신청 가능

• 코칭비용

- 유형① : 회당 5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2,00만원
- 유형② : 회당 30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600만원
* 유통채널 입점을 전제로 제품패키지 개선 등을 위해 필요 시 회당 300만원 코칭 가능하고, 입점제품이 2개 품목 이상일 경우 2회까지 코칭 가능(최대 600백만원)
** 유통채널은 대형마트, 농협 하나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온오프라인으로 기존에 입점한 제품 이외의 제품을 입점할 경우 인정
- 유형③ : 월당 10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1200백만원
* 보육 기간 및 방문주기는 경영체가 선택/ 월 최대 100만원 지급/ 방문 시간에 따라 지급(월 4시간 이상 기준)

6. 사업기간 : 모집공고일 ~ 12월까지(자금 소진 시까지)

7. 추진절차 : 신청·접수 → 상담(지원센터↔신청자) → 전문가 매칭 및 통보(지원센터→신청자)
→ 자부담 입금 → 현장코칭 → 만족도조사 및 완료점검

8. 신청·접수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메일 접수

9. 구비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개별농가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함) 1부.

| 문의 |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064-722-7916



jeep61@jri.re.kr

< 붙임 1 >

현장코칭 전문위원 분야

구분	분야	특기분야
경영 (6)	경영전략	○창업, 경영전략, 품질경영, 환경경영 등
	마케팅/홍보/ 디자인	○마케팅, 시장조사, 유통채널, 식품 소비트렌드 등 ○스토리텔링, SNS 등 활용 홍보방안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선 방안, 인테리어 등
	재무/생산성 향상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등 ○생산관리, 원가분석 등
	지적재산권/ 법률	○특허출원 및 등록, 기술 보호 자문, 지적재산권 관리 등 ○창업 관련 법인등록 등 법률 자문
	농촌관광	○지역관광 창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자문 등
	수출	○국별 소비트렌드, 생산제품별 해외 유통채널 확보 방안 자문, 할랄인증, 원산지표시 등
기술 (5)	제품개발/가공기술	○제품개선, 신제품 개발 등 ○가공기술 검토 및 진단, 개선방안 상담 및 지도 - 농축, 살균, 여과, 냉장 및 냉동, 저장기술 등
	공장신축·증축	○생산시설 개선(신축, 증개축, 동선 개선 등)
	품질관리/ 법규준수/ 위생관리/공정개선	○식품검사(이화학, 미생물 등), 공정관리 등 ○식품 관련 법규 이해 및 준수방법 등 ○HACCP, 식품안전관리 등 ○제조공정의 검토 및 진단, 개선방안 상담 및 지도 - 생산능력 저하요인 규명, 기계장비의 효율성 평가, 생산설비의 재배치, 제품생산 자동화 등 ○GLOBAL GAP인증 및 친환경농업 등
	ICT	○전산화, SNS활동, 쇼핑몰 구축·운영 등
	음식개발	○메뉴 개선 및 개발, 농가레스토랑 개설 및 운영 등

< 서식 1 >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지원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코칭 상담 및 코칭 수행 등을 위해 관련정보(기업,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현장코칭 추진에 따른 자부담 납부 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코칭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여부를 <input type="checkbox"/>에 표시하세요. 						
신청 업체 현 황	사업체명		설립년도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농촌융복합산업			
	법인(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인증일			
	경영체등록번호		(인증사업자에 한함)			
	주소				홈페이지	
	연락처	전화:		담당자(직책/성명)	e-mail:	
		팩스:			H.P: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input type="checkbox"/> 식품제조·가공 <input type="checkbox"/> 체험·관광 서비스 / 외식 <input type="checkbox"/> 유통 <input type="checkbox"/> 기타(※세부유형 작성)				
구성현황	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 작성					
주 품목						
지 도 신 청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1유형(50만원/4회) <input type="checkbox"/> 2유형(300만원/2회, 유통업체 입점조건) <input type="checkbox"/> 3유형(월 100만원/4시간 이상, 최대 12개월)				
		입점 현황 등	※ 2유형(300만원)의 경우 기존 입점제품 및 업체 등 컨설팅 전 입점현황 작성 ※ 3유형(월100만원)의 경우 보육매니저 현장코칭 기간 기재 필수 - 보육매니저를 통해 상시컨설팅을 받고자하는 기간			
	신청분야 (해당분야√표시) *신청분야는 신청횟수와 동일	경영	<input type="checkbox"/> 경영전략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재무 <input type="checkbox"/> 생산성 향상 <input type="checkbox"/> 지적재산권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마케팅(유통채널 등) <input type="checkbox"/> 농촌관광(체험프로그램 등) <input type="checkbox"/> 법률(인등록 등 자문)			
		기술	<input type="checkbox"/> 제품개발 <input type="checkbox"/> 공장신축·증축 <input type="checkbox"/> 품질관리 <input type="checkbox"/> 위생관리 <input type="checkbox"/> 음식개발 <input type="checkbox"/> 공정개선 <input type="checkbox"/> 법규준수 <input type="checkbox"/> ICT(전산화, 쇼핑몰구축·운영 등) <input type="checkbox"/> 가공기술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타			
	희망 전문위원	(소속)	(직위)	(성명)	/ (단체명)	
	희망시기	00월				
현장코칭이력	기존에 현장코칭을 받은 실적 작성(연도와 횟수, 분야 작성) / (예) (2016년) 2회(유통, 가공기술)					
지도 받고자 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공란 부족 시 별지로 작성)						
<p>본인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2019년도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에 신청하며 상기 내용의 코칭을 받고자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장 귀하</p>						

< 서식 2 >

2019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만족도 조사표(안)

1. 신청업체 및 전문위원

조사일시	2019. . . .	조사자	
신청업체		대표자	
전문위원			

2.만족도 조사표

구분	설문내용	항목별 배점				
		(10점)	(8)	(5)	(3)	(1)
전문가 역량	이번에 받으신 현장코칭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번에 받으신 현장코칭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번 현장코칭 결과의 활용 가능성이 높고 현실성 있습니까?					
	코칭 전문위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칭 전문위원이 문제의 핵심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코칭 전문위원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가?					
코칭 전반	코칭 희망분야에 적합한 전문가가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코칭 진행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코칭을 다른 경영체에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향후 현장코칭을 또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합계	— 점					
기타 의견						

※ 만족도 조사는 코칭이 최종 종료(최초 신청한 코칭횟수가 종료된 후)에 조사

3. 안테나숍 운영

(1) 사업개요

6차산업 인증사업자, 향토제품 등의 홍보·판매를 통해 판로를 모색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시장친화적인 제품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촉진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주요사업
 - 유통품평회 개최 안테나숍 입점 상품 발굴
 - 소비자 반응도, 판매 실적, 개선사항, 보완사항 조사 피드백
 - 우수제품 중앙단위 판촉사업 참여

(2) 세부추진 계획

- 안테나숍 운영 : 소비자가 많은 지역에 안테나숍을 설치, 6차산업 사업자 생산제품, 향토제품 등을 위탁판매
- 홍보 : 6차산업제품 안테나숍 입점 홍보
- 유통품평회 개최 : 6차산업제품 안테나숍 입점 위한 유통품평회 및 입점 상담회 개최

문의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064-722-7915



ddarabi@jri.re.kr



성산포항



이마트 서귀포점



이마트 신제주점



이마트제주점



이마트 서울 목동점



이마트 서울 용산점

4. 유통플랫폼

(1) 사업개요

제주지역 6차산업 우수제품을 소비시장에 알리고 시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비력이 큰 대형 마트를 활용한 프로모션 진행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주요사업
 - 지역 내외 제주6차산업 인증사업자 생산제품,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 농진청·산림청 지원으로 생산된 제품 판촉전 실시
 - ※ 식품과 비식품 포함, 6차산업화 제품과 연관된 원물
 - 우수제품 중앙단위 판촉사업 참여

(2) 세부추진 계획

유동인구가 많은 도 내외 지역에 기획판매전 개최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박람회, 축제장 참여

| 문의 |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 064-722-7915 ✉ ddarabi@jri.re.kr





제주농업·농촌
6차산업화지원센터

